

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(3)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
2012년 05월 16일

속 초 시 장



1. 행정처분일 : 2012. 05. 16

2. 행정처분 대상업체

상 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영 업 소재지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처분일자)	행정처분 사 유	처분근거
(주)대성석재 144511-*****	기광남	속초시 대포동 932-8	석공사업 (속초2008-04-01)	등록말소 2012.05.25	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(3)

3. 공고장소 : 속초시 홈페이지 및 건설업정보통신망(<http://con.kiscon.net>)

4. 공고내용

가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정보통신망(<http://con.kiscon.net>)에 공고하였으며,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에 청구하시거나,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설과(☎033-639-27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